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의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학교폭력 문제의 예방을 위한

다각적인 노력 중 하나인 학부모 교육을 규정하여,

학부모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통해

학생들의 피해와 가해를 예방하고

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
- 또한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 조항은
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학내 문제 관심 제고와
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적 효과를 이룰 것으로
예상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안 제10조의 2에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,
자녀와의 소통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
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고,
교육감에게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
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